# 제995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| no. | 법령명 | 규제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1 |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<br>(보건복지부) | 1.제대혈은행의 내부정도관리 항목 구체화(강화)<br>o 제대혈은행의 내부정도관리규정에 포함해야 하는 세부 항목을 별표2제4호가목1)에 구체화함<br>– 내부정도관리규정 항목에 인력 교육 및 평가, 시약 및 소모품, 시설 및 장비, 품질검증 (Validation), 문서 및 기록 등 5개 항목을 포함<br>▶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5조<br>▶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2 | 1.비중요 |
| 2 |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<br>(행정안전부) | 1.질문검사권 대상 친족의 범위 확대(강화)<br>o 친족의 범위를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해 혈족, 인척 범위를 축소하고 혼외출생자의 생부·생모를 추가<br>▶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| 1.비중요 |
| 3 |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<br>(문화체육관광부) | 1.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한(강화)<br>o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한을 최대 5년으로 설정하고 정부의 단체 지정 시 보상권리자 의견수렴 의무화<br>▶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 | 1.비중요 |

| no. | 법령명 | 규제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| | 2.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운영 공개 범위 확대(강화)<br>ㅇ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정보공개 범위 강화<br>– 상근 및 비상근 임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받은 개인별 보수, 회의참석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금전<br>– 상근 및 비상근 임원의 개인별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<br>▶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3 | 2.비중요 |
| 4 |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<br>(산업통상자원부) | 1.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강화(강화)<br>ㅇ 전기자동차의 차급 분류 및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개편<br>– (전기승용차) (현행) 중 · 대형 3.7km/kWh 이상<br>→ (개정) 중형 4.2km/kWh 이상, 대형 3.4km/kWh 이상<br>– (전기버스) (현행) 차급 무관 1.0km/kWh 이상<br>→ (개정) 5개 차급 차등 적용(1.06km/kWh 이상~ 2.57km/kWh 이상)<br>▶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| 1.비중요 |

| no. | 법령명 | 규제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5 |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<br>(금융위원회) | 1.장외거래 업무수행시 준수사항(신설)<br>ㅇ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운영을 위해 인가를 받은 장외거래중개업자가 준수해야 할 매매체결 방식, 종목구분(일반종목과 전문종목), 유통대상 증권과 관련한 공시, 발행과 유통의 분리 등 업무기준을 규정<br>▶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의2<br><br>2.금융투자업자 등의 제재사유 추가(신설)<br>ㅇ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매매결제방법,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체계 구축, 불공정거래예방 등을 위한 운영기준 마련,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기준을 규정하고 동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 중 하나로 규율<br>▶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,제374조 | 1.비중요<br><br>2.비중요 |
| 6 |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<br>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| 1.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 기준(신설)<br>ㅇ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일자 등을 규정<br>▶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의2 | 1.비중요 |

| no. | 법령명 | 규제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7 |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· 관리기준 제정안<br>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| 1.관리주체의 유지보수 · 관리 및 성능점검 의무 신설<br>(신설)<br>o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· 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절차 규정(제7조)<br>– 관리주체는 최초 점검 실시 전까지 점검 항목, 방법 및 주기 등이 포함된 유지보수 · 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<br>o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· 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규정(제7조①[별표1])<br>– [별표1]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· 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으로 규정<br>o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· 관리 의무 규정(제8조)<br>– 관리주체는 [별표1]의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외관, 기능 및 안전으로 구분하여 건축물등의 완공되는 날부터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규정<br>o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의무 규정(제10조)<br>–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건축물등의 완공되는 날부터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하도록 규정<br>o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검토사항 규정(제10조①[별표2])<br>–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시 정보통신설비 시스템을 검토하고 성능점검표를 작성하도록 규정 | 1.비중요 |

| no. | 법령명 | 규제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| | o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서식 규정(제10조④[별지 제3호])<br>–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시 필요한 점검내용과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, 정보통신설비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<br>▶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· 관리기준 제7조,제8조,제10조 | |